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829호

2022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

근무기관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정부청사 관리본부	청원경찰	**18명 (남)**	○ 정부세종청사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정부세종청사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 경비구역의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 정부세종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 정부세종청사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 정부세종청사 경비·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 등

2.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경력 및 지역 제한없음

3. 우대 및 가점사항

가.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 예정일 /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적용

○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연차별 차등우대)

-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직무(특수경비, 청원경찰)가 명시된 경우, 또는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예정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가능)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소지여부별 차등우대)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등급별 차등우대)

○ 공인무도단증(1~3단) 소지자(단일종목에 한함, 등급별 차등우대)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23조 제4항에 따른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별첨2)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급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여부별 차등우대)

나. 가점사항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 예정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체력검사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서류전형 및 체력측정 만점의 5% 또는 3% 가산함.

※ 가점은 응시자가 제출한 「의사상자 등 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 및 가산 비율을 선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 기관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 및 가산 비율을 선택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채용분야	내 용	
청원경찰	보수	▪ 기본급 월1,686,500원(1호봉 기준, 세액공제 전) **※경찰청 고시금액** - 추가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별도
	근무시간	▪ 4교대 근무 - 주간 근무시간 08:30~18:30, 09:00~18:00 - 야간 근무 17:00~다음날 09:00까지 ※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의거, 청사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중

※ 청사 근무여건에 따라 추가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
후생복지 : 4대보험(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5. 심사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각 평가요소를 점수화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 서류심사 기준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정량평가] 우대 및 가점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등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시험) 체력검사

○ 시험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측정 종목 : 악력,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 평가 방법 : 체력검사 기준표(별첨3)에 따라 종목별 점수 부여

※ 체력측정 기준표에 의거 국민체력진흥공단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 합격 기준 : 전 평가종목 총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커트라인 동점자 전원 합격)

○ 종목별 측정방법

※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1차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

가) 악력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나) 제자리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다) 윗몸일으키기

- 장비에 앉아 양발을 고정하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라) 왕복오래달리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측정은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도핑테스트**

- 체력검사의 공정성 확보 및 응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금지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제2019-1호)

- 실시대상 : 필요시 체력검사 당일 응시자 중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도핑테스트 안내 및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등 : 별첨4 ~ 별첨5 참고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 정지함(단, 치료목적일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면책 신청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심사, 체력검사와 별개

※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인성검사 후 실시,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응시 불가)

○ 시험대상 : 2차시험(체력검사)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 혹은 집단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 정 요 소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체력시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공고	'22. 10. 11.(화) ~ 10. 21.(금)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2. 10. 11.(화) ~ 10. 21.(금)	◦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서류심사(1차시험) 합격자 발표	'22. 11. 11.(금) 예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및 체력검사 장소 공고
체력검사(2차시험)	'22. 11. 29.(화) 예정	
체력검사 합격자 발표	'22. 12. 5.(월) 예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인성검사	'22. 12. 9.(금) 예정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응시 불가
면접심사(3차시험)	'22. 12. 16.(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2. 12. 30.(금) 예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심사 합격자 및 제출서류 공고

※ 채용일정은 응시인원,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mo.go.kr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 세부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 체력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관련 세부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9항)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2. 10. 11.(화) ~ 10. 21.(금) 18:00까지

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동 301호 (우편번호 : 30110)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채용담당자(☎044-200-1422)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해당 서식<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1호>을 참고하여, 상기 응시원서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붙임 서식 활용)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예정(미통보 시 접수처에 확인)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혹은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첨부(행정수수료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되, 해당 증명서 제출 필요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1부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앞뒷면 모두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관련 공무원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시근무 여부, 주당 근무시간), 발급기관, 발급 담당자(연락처 포함)를 반드시 기재**

②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사본 1부

③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사본 1부

④ 공인무도단증(1~3단) 사본 1부

⑤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사본 1부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변조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에 유의

9. 기타(유의) 사항

○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1호봉으로 함. 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그 외의 경력은 보수 산정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전형 세부계획은 공고 예정일에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시험장 내에서는 공정한 체력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며 (휴대폰 촬영 등),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절대로 금지함

○ 체력검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체력검사 이전이나 체력검사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나 부상에 유의하시기 바람

※ 체력검사 시 복장(신발) : 자유선택(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

○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 및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음

○ 체력검사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받아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 바람

○ 해당 분야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관련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채용담당(☎ 044-200-1422)
- 직무관련 : 청원경찰 담당(☎ 044-200-1492)

<별첨 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주요업무	○ 정부세종청사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정부세종청사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 경비구역의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 정부세종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 정부세종청사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 정부세종청사 경비·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 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업무 이해도)**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청사 방호 개념, 청원경찰의 역할, 상황 대응 요령 및 상황보고 체계 ○ **(직무분야 역량)** -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통제, 보안검색, 민원 대응 능력 등 문제 해결 능력 및 신체적 관리

필요지식	○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기·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청사방호 및 관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별첨 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9)**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별첨 3>

실기(체력)시험 측정 종목 및 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좌우 악력 (kg)	57.0 이상	54.0 ~56.9	51.0 ~53.9	48.0 ~50.9	45.0 ~47.9	42.0 ~44.9	39.0 ~41.9	36.0 ~38.9	33.0 ~35.9	30.0 ~32.9
	제자리 멀리뛰기 (cm)	245 이상	240 ~244	235 ~239	230 ~234	225 ~229	220 ~224	215 ~219	210 ~214	205 ~209	200 ~204
	윗몸일으키기 (회/1분)	57 이상	55 ~56	53 ~54	51 ~52	49 ~50	47 ~48	45 ~46	43 ~44	41 ~42	39 ~40
	20m 왕복 오래달리기 (회)	75 이상	70 ~74	65 ~69	60 ~64	55 ~59	50~ 54	45 ~49	40 ~44	35 ~39	30 ~34
여자	좌우 악력 (kg)	34.5 이상	32.5 ~34.4	30.5 ~32.4	28.5 ~30.4	26.5. ~28.4	24.5~ 26.4	22.5 ~24.4	20.5 ~22.4	18.5 ~20.4	16.3 ~18.4
	제자리 멀리뛰기 (cm)	180 이상	175 ~179	170 ~174	165 ~169	160 ~164	155 ~159	150 ~154	145 ~149	140 ~144	135 ~139
	윗몸일으키기 (회/1분)	46 이상	43 ~45	40 ~42	37 ~39	34 ~36	31 ~33	28 ~30	25 ~27	22 ~24	19 ~21
	20m 왕복 오래달리기 (회)	41 이상	38 ~40	35 ~37	32 ~34	29 ~31	26~ 28	23 ~25	20 ~22	17 ~19	14 ~16

종목별 합계점수 2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별첨 4>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필요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필요시 체력검사 당일 응시자 중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개별통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51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별첨 5>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Ⅰ.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Ⅱ.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 락 처
※ 담당자 기재	청원경찰 (정부세종청사)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선택사항은 비고란에도 반드시 기입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미제출	비 고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			
1-1. 정부수입인지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선택사항>			
7.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부)			
8. 자격증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9. 공인무도단증 (부)			(예시) ▶태권도 3단 ▶합기도 2단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청원경찰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분야	청원경찰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전자우편				
전화(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교부용)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년 월 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는 체력시험시 교부되며,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체력시험,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청원경찰(정부세종청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주소 등은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 제출 시, 출력물을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모집단위)	청원경찰 (정부세종청사)	성 명	

2. 우대사항

1.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관련 공무원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0000	18.1.1 ~18.12.31	과장	청원경찰	주 00시간

2. 자격증(경비지도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비지도사	'00.00.00	0000

3. 자격증(응급구조사)

자격증명	등급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응급구조사	1급	'00.00.00	0000

4. 무도단증

무도명	무도등급	취득(예정일)	단증번호	발행기관
태권도	3단	'00.00.00	000호	0000

5. 자격증(사무관리분야)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컴퓨터활용능력 1급	'00.00.00	0000

6.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률	보훈번호	가점비율	발급처
국가유공자	000호	10% / 5%	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홍길동	응시분야	청원경찰(정부세종청사)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이해

(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지원동기 및 향후 계획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적으시오)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2022. . .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간단히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반드시 동의란 체크 후 하단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청원경찰**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등 (*자격 및 경력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청원경찰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청원경찰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청원경찰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청원경찰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청원경찰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홍길동	응시분야 (근무지)	청원경찰 (세종)
생년월일	'00.00.00		

본인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귀하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지원분야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연락처 : 휴대전화 ( )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동 301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30110)

연락처 : 02-200-1422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